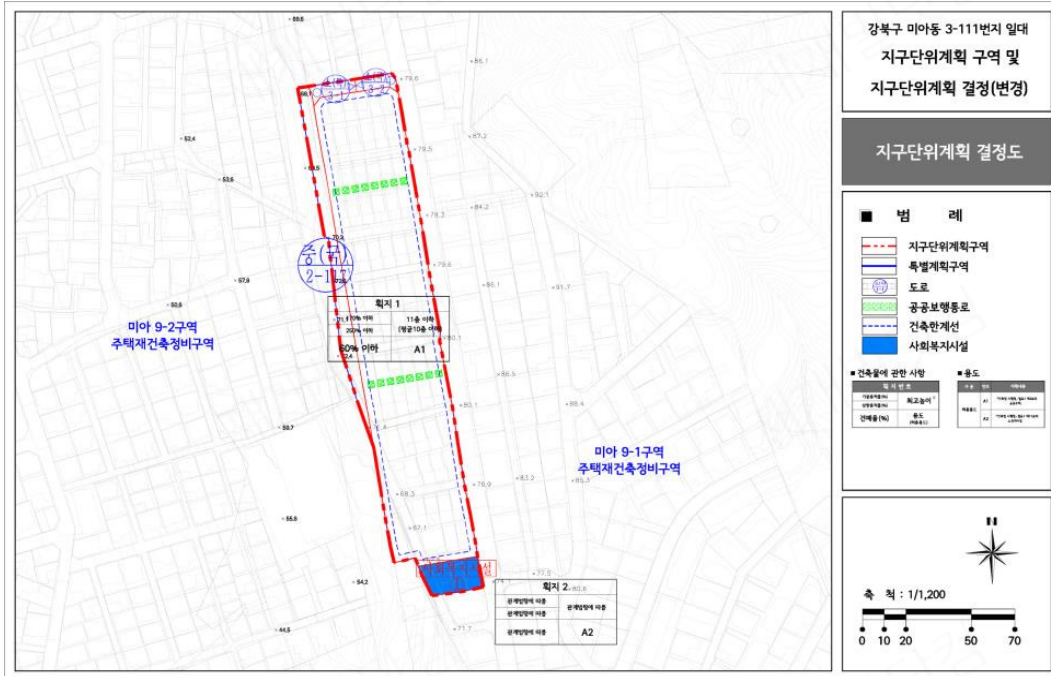


□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변경 없음)

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73호

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0호(2002.02.15.)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6호(2019.04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9호(2017.07.13.)로 변경결정 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공공청사의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을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9.12.11)를 거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○ 공공청사에 대한 측량성과 반영, 공간적 범위 변경, 비도시계획시설의 도입용도 추가

II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: 변경없음

III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

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: 변경없음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가. 교통시설: 변경없음
 - 나. 공간시설: 변경없음
 - 다. 공공·문화체육시설: 변경
 - 1) 공공청사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①	공공청사	공공업무·근린공공시설 (종합행정타운)	상도동 176-3일대	14,046.0	감) 20.5	14,025.5	서고시 제338호 ('94.10.15)	측량오차반영

■ 건축규모 범위 결정(변경)조서

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고
60%이하	360%이하	75m이하	준주거지역

※ 공공청사 용적률 360%이하에는 비도시계획시설 연면적이 포함된 사항임.

■ 공간적 범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공간적 범위	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공공청사	상도동 176-3 일대	면적 (㎡)	1,500	공공청사 중 지상1층 일부 (감 500㎡ 이하) 지하1층 일부 (감 2,000㎡ 이하)	- 공공청사 · 비도시계획시설 (지상1층 일부, 지하1층 일부)을 제외한 모든 구간 - 비도시계획시설 · 지상1층 일부 (2,000㎡ 이하) · 지하1층 일부 (3,000㎡ 이하)	서고시 제2017-259호 (17.07.13.)	
				층	지상1층 1,500㎡ 지하1층 1,000㎡를 제외한 모든 구간				

※ 지상1층 비도시계획시설 면적(2,000㎡이하)은 필로티(보행통로) 포함 면적임

■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신설	허용 ·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다, 라, 바, 자목 (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이용원, 의원, 우체국, 금융업소 등) ·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라, 바, 아, 자목 (공연장, 서점, 사진관, 일반음식점 등) ·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, 라목 (공연장, 전시장) · 제7호 판매시설 다목 (상점)	-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공청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공공업무·근린 공공시설 (종합행정타운)	●공공청사 면적 감소 - 14,046.0→14,025.5㎡ (감)20.5)	●측량결과반영에 따른 공공청사 면적 변경
		●비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공간적 범위 변경 - 지상1층 : 1,500→2,000㎡ 이하 - 지하1층 : 1,000→3,000㎡ 이하	●기존 상인 수용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변경
		●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 신설	●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계획을 당초 지구단위 계획시행지침에서 도시계획시설 조서에 포함 ●기존 업종의 수용 및 상인·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청사 내 비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

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4. 특별계획(가능)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: 변경없음

③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④ 기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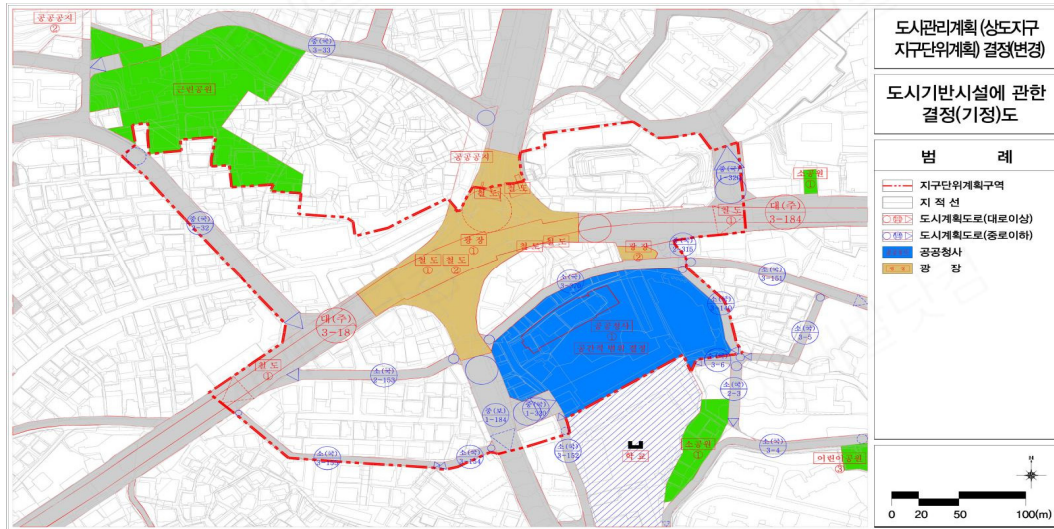
1.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: 변경

구분	기정	변경	비고
제3조 용어의 정의	●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① ~ ㉔	●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① ~ ⑧ ⑨ “허용용도” 라 함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은 불허한다. ⑩ ~ ㉔	-
제10조 불허용도	① ~ ③ ※ 공공청사(종합행정타운) 내 비도시계획시설은 근린상업(교차로) 저층 권장용도 외 불허(아래 항목에 한해서 허용) -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라목 -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, 라, 아, 자목 -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, 라목 -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	① ~ ③ ※ 삭제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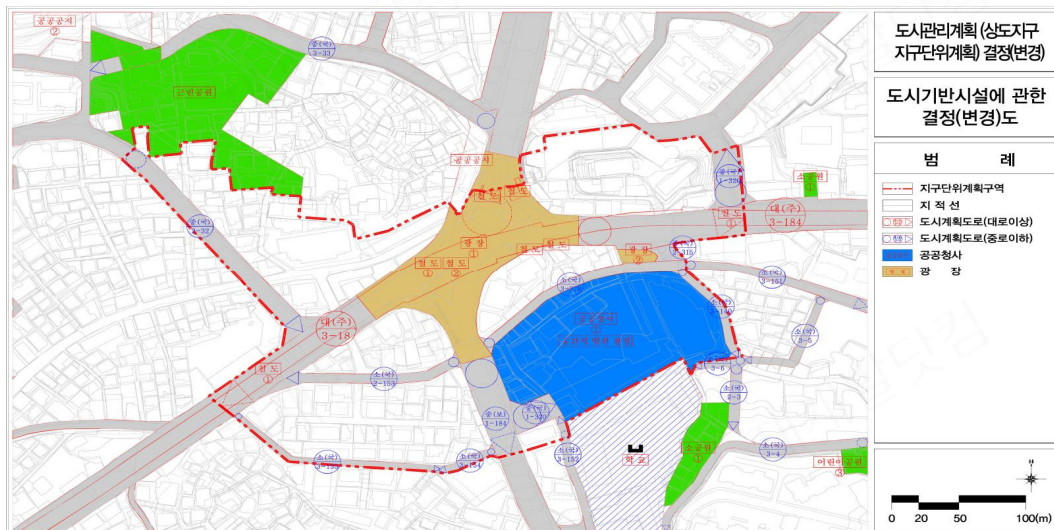
2.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: 변경없음

IV. 관계도면: 상도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도면

○ 도시기본시설 결정도(기정)



○ 도시기본시설 결정도(변경)

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V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 02-2133-8412) 및 동작구 전략사업과(☎ 02-880-359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